

〈기획 논문 - 중국 접경·화해·공존〉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과 혼인: 중국 윈난 소수민족 촌락을 중심으로*

안치영** · 장정아***

목차

- I. 배경과 변민
- II. 조사지역과 조사 개요
- III. D촌의 경제 활동과 변경 교역
- IV. 라오스와의 변민 통혼
- V. 중국의 변경관리: 관행과 제도
- VI. 결론

I. 배경과 변민

중국에서 변경(邊境)은 국경 즉 변계(邊界) 또는 국제(國界), 그리고 그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이에 비하여 변강(邊疆)은 주로 강역을 가리키는데 국경에 인접한 지역을 의미한다. 현대 중국의 변강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 중심부와 구분되는 주변부(지리적 변강); 문화적으로 한문화와 다른 이질적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문화적 변강); 정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원심력이 상존하는 지역(정치적 변강); 민족적으로 한족 이외의 다양한 소수민족집단이 거주하는 지역(민족적 변강).¹⁾ 변강은 청대에는 내지(內地)가 아닌 변부(藩部)가 있던 지역을 의미하였고,民国시기에도 이를 계승하여 변경의 소수민족지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대적 ‘변강’ 개념의 출현은, 원심력이 상존하던 변부지역에 대해 배타적 영토임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었다.²⁾

현재 중국에서 변강은 주변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성(省)과 소수민족 자치구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그 중 국경을 접하지 않는 비소수민족 지역 현을 제외하기도 한다.³⁾ 중국의 전체 육지에서 국경은 2.2만 킬로미터이며 그 중 소수민족지역이 1.9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변경의 현(縣

-
- 1) 박상수, 「중국 근대 민족국가의 창조와 변강문제: 청말-민국시기 변강 인식의 변천」, 안병우 외, 『중국의 변강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218쪽.
 - 2) 중화민국 정부 시기부터 다양한 행정적 수단과 논리를 통해 변강에 대한 영토화가 이뤄졌다. 변강지역 소수민족에 대해 1930-40년대에 등장한 다양한 논리, 즉 한족 중심의 흡수동화론, 한족과 같은 기원이라는 민족동원(同源)론, 나아가 변강과 변강민족의 존재와 특수성 자체를 부정하는 변강민족 부정론은 모두 국가주의를 공통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박상수, 앞의 글, 2007 참고. 소수민족의 특수성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발명되거나 억압되는지에 대해서는 김광익, 「총론: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005 참고.
 - 3) 馬大定 主編, 『中國邊疆經略使』, 中州古籍出版社, 2000, 1-2쪽. 안병우에 따르면 변강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근대에도 사용했지만 이는 내지보다 뒤진 지역이라는 의미였고 邢玉林이 지적하였듯 ‘관습적·자연적 경계의 안쪽’을 의미하여, ‘국가 육로변계선의 안쪽’이라는 근대 이후 의미와 달랐다. 안병우, 「총론: 중국의 변강인식과 민족갈등」, 안병우 외, 『중국의 변강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21-22쪽.

(旗)은 143개인데 그 중 소수민족 지역이 112개이다.⁴⁾ 이는 중국의 변경 지역이 주로 소수민족지역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변강 또는 변경은 중앙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권력의 접이지대인 주변의 오지이자 서로 이질적인 것이 접하는 분계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경이 명확한 지리적 분계 또는 민족과 문화·경제 생활의 공간적 차이를 기초로 그어진 것은 아니다. 분명한 지리적 경계를 기준으로 그어진 경우도 있지만, 불충분한 정보와 부정확한 지도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활공간과는 괴리되게 국경이 그어진 곳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국경을 재확정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했고 국경 충돌도 생겨났으며, 중국과 인도의 국경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경의 형성과정과 관련된다. 중국의 전통 관념에서 변경 내지 국경은 선 개념이 아니라 ‘界域국경’ 관념에 기반한 것이었다.⁵⁾ 변강을 포함한 중국의 강역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왔지만 선으로서의 국경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영토의 역사적 고유성에 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강역을 나누는 명확한 국경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강역을 선으로 구분하는 국경은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 중국 주변을 식민통치하던 제국주의 국가와 중국의 중앙권력에 의하여 그어진 것이었다. 영토를 분할하는 국경은 지도위에 분명한 선으로 그어졌지만 부정확한 지도 위의 선은 실제와 괴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민족, 문화, 경제생활 공간과도 괴리가 있었다.

지도와 실제의 괴리는 각 국가들이 주목하는 국제적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으로서의 경계선과 변경지대를 구분해야 하고, 본질적으로 불

4) 羅崇敏, 『中國邊政學新論』, 人民出版社, 2006, 8쪽.

5) 김홍철, 『국경론』, 민음사, 1997, 163쪽.

확정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으로서 변경지대를 바라보며 이 변경으로부터 국경과 국민국가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⁶⁾ 그런데 중국에서 변경지역 사람들의 생활공간과 국경의 괴리는 국경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구에서도 주변적인 문제였다. 주목할 점은, 변경지역 사람 즉 변민(邊民)들은 국경에 의해 자신들의 생활공간이 재분할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 생활공간을 기초로 한 활동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변민들의 그러한 교류는 한편으로는 기존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져온 전통적 활동의 연속이지만 다른 한편 국가의 범위를 넘는 초국가적인 것으로서, 전통과 관례에 따른 자율성을 지니는 동시에 국가의 특수한 관리와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윈난의 라오스 접경지대에 있는 다이족 촌락의 교역과 혼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중국 변경지대 변민들의 초국가적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6) 김홍철, 앞의 책, 1997, 42쪽; 임지현 엮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2004. 강주원은 북중 국경지역인 단둥 연구를 통해, 선으로서의 국경이 아니라 공유되는 지역으로서 국경지대를 바라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주원은 특히 북중 국경지역의 철조망을 한국에서 지나치게 ‘장벽이자 단절’로만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면서, 철조망 자체도 2000년대 들어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중국사람들이 철조망 너머의 북한 사람들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2006년 전후 압록강대로와 두만강대로의 건설로 점점 국경이 고정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국경은 ‘금지선’이라 할 수 없고,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공유하며 이 ‘공유지대’를 터전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주원,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눌민, 2016 참고.

7) 국경에 걸쳐서 분포해있는 과계(跨界)민족이 갖는 위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신중국 이후 민족식별작업 및 소수민족자치지역 성립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강원, 『중국 변경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어룬춘족 사회의 다민족화와 정체성의 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참고.

II. 조사지역과 조사 개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녀온 일종의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⁸⁾ 그 중 베트남·라오스·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윈난성은 현재 국경으로 그어진 지역에 흩어져 살아온 민족들로 인해 이웃 국가들과 밀접한 왕래가 장기간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다이(傣)족 외에도 묘족, 이족, 하니족 등 여러 민족들이 살던 곳에 나중에 국경선이 그어졌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적 동질성과 교류는 크게 단절되지 않았고 통혼도 계속 이뤄져왔다.⁹⁾ 고대 라오스지역에서 생활하던 부족 중 중국 서남지역에 남아 생활해온 이들은 다이족 등 소수민족의 선조가 되었다. 서로 물을 뿌리며 축복을 비는 포수이제(潑水節)와 같은 중요한 명절을 공유한다는 점, 라오스어와 중국 다이족의 언어의 유사성이 크다는 점 등은 이들간의 혈연관계를 보여준다.¹⁰⁾

중국과 라오스 사이의 변경지역은 역사적으로 확정된 경계선이 없이 모호한 완충지대를 형성하였고 역사적으로 상호교류가 빈번하게 이뤄져왔다.¹¹⁾ 중국과 라오스간에 국경이 맞닿은 경계선의 길이는 총 505킬로미터이다. 청조와 프랑스가 1895년 청조와 베트남간의 국경조약(續議界務專條附章) 서명에 이어 1897년 윈난과 베트남간 경계 조약(滇越界約)에 서명하여 국경선을 확정하였지만 당시 기술적 한계로 지도 표시가 서로 불일치

8) 전인갑·장정아,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구성 再論: 중심의 상대화를 위한 모색」, 『中國學報』 69집, 2014.

9) 吳春玲, 「我國西南邊境地區非法涉外婚姻問題初探」, 『湖南警察學院學報』, 第9卷第2期, 2017.

10) 劉恩恕·劉惠恕, 『中國近現代疆域問題研究』, 2009; 손준식 역, 『중국 근현대 영토문제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330-331쪽.

11) 朱凌飛·馬巍, 「邊界與通道: 昆曼國際公路中老邊境磨憨、磨丁的人類學研究」, 『民族研究』 4期, 2016.

하여, 나중에 중국과 라오스간의 국경선에 대해 양국간 인식차이가 생겨났다. 신중국 성립후 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경선을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1980년대말 양국관계 정상화후 본격적으로 국경선 문제 해결에 착수하여, 1990-91년에 3번에 걸친 담판 끝에 의견이 일치되어 1991년 10월 24일 변계조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1월부터 8월까지 양국은 전체 국경선에 국경표시를 하였고 1993년 1월 31일 양국 정부가 변계의정서에 서명하여,¹²⁾ 현재까지도 이 국경선을 양국이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경선이 그려지고 변민들에게 1955년부터 통행증이 발급되었지만,¹³⁾ 변민들은 통행증에 크게 관계없이 몰래 자유로이 왕래하였다. 변민에게 있어서 몰래 오솔길로 왕래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었고, 변계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오솔길로 2시간이면 라오스쪽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규 도로로 가기보다 오솔길로 오가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사지역인 원난성의 다이족 촌락(이하 D촌)은 중국과 라오스 국경변의 변경 촌락으로 국경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시쌍반나(西双版纳)의 한 반나에 속한 곳이었지만 현재는 시쌍반나가 아니라 푸얼(普洱)시에 속한 장청(江城)현 정동진(整董鎮)의 촌락이다. 시쌍반나는 다이족의 언어로 열두 개(시쌍)의 부락(반나)이라는 의미인데, 반나는 현(縣)보다 작은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현재 시쌍반나지역에는 12개의 반나가 아니라 10개의 반나 지역만을 포괄하며, 나머지는 푸얼시의 정동진(整董鎮), 그리고 라오스 풍살리(Phôngsali) 주의 윗우(Yot Ou District 伍德, 烏德) 지역이다.

열두 개의 반나 중 하나였던 정동은 전통적으로 토사(土司)가 관할하였

1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條約法律司 編,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 中老卷』, 2004, 1-2쪽.

13) 「中朝中尼中印新版邊民證啓用」, 『人民日報海外版』 2016.11.4.

지만, 민국 18년(1929년) 윈난 변경에 장청현(江城縣)을 설치하면서 장청현에 귀속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1953년 시쌍반나 자치주가 성립되면서 시쌍반나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1959년 장청현으로 귀속되었다가 1962년 다시 시쌍반나로 귀속된 후 1966년 다시 장청현으로 귀속되었다. 1966년에는 장청현 캉핑(康平)구의 관할을 받았지만 1988년 캉핑구에서 분리되어 정동진이 설치되었다.

라오스 풍살리 주의 옷우는 청조시기인 1895년 프랑스와 청조의 국경조약에 의해 정해진 윈난과 베트남 국경의 일부가 이후 중국과 라오스 국경선이 되면서 라오스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은 1980년대 말 양국의 관계정상화 이후 1895년 국경조약을 기초로 1991년 국경조약을 통해 확정되었다. 여기서 시쌍반나의 열두 반나 중 두 곳이 각각 푸얼시와 라오스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역사적·전통적 영역이 현대의 국경이나 행정구역과 가지는 괴리를 보여준다. 즉 근대 국가와 중앙권력이 현지 역사와 상황과는 별개로 국경과 행정구역을 나누었음을 의미한다.

조사지역인 D촌은 110호 500여 명이 거주하는데, 그 중 절대다수가 다이족이고 소수의 한족과 하니족이 함께 거주한다. 마을의 형성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고, 길게는 500년까지도 보지만 대체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염정(鹽井)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인데 『장청현지(江城縣志)』에는 옹정 3년 1725년 염정을 개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⁴⁾ 과거 소금을 생산할 때는 라오스지역과 징홍(景洪)의 염상들이 왕래하였지만 소금 제조와 판매 등을 둘러싼 국가권력과의 갈등 등의 이유로 민국시기 염정이 폐쇄되었다. 염정 폐쇄 후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변경지대의 특성상 촌의 토지는 비교적 넓은

14) 雲南省江城彝族哈尼族自治縣志編纂委員會 編, 『江城彝族哈尼族自治縣志』, 雲南人民出版社, 1989, 6쪽.

데, 집체 토지가 3000여 무, 개혁이후 개인에게 분배하여 개간한 산지의 마을 공동 임지가 3000 여 무, 그리고 평지의 토지가 3000여 무 등 모두 1만 여무에 달한다. 산지에는 주로 차, 고무나무, 파인애플 등을 재배하며, 평지에는 용과(龍果), 수박, 호박, 벼 등을 재배한다. 또한 과거에는 소와 돼지 등을 많이 사육하였다.

현지조사는 중국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필자들은 조사의 구체적 주제와 방향, 항목에 대해 처음 기획부터 함께 하면서 조사과정에서 계속해서 조사계획을 수정보완하며 공동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현지조사를 하는 조사팀이 있었고, 필자들은 2016년과 2017년에 두 차례 현지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조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과 주목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공동조사한 자료와 직접 참여관찰한 조사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Ⅲ. D촌의 경제 활동과 변경 교역

D촌 주민들은 광활한 토지를 기초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돼지와 소도 비교적 많이 사육하였다. D촌의 토지는 원래 정동진 토사(土司)의 소유로서,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토사의 영지를 경작하였다. 민국시기 개토귀류(改土歸流)¹⁵⁾ 이후 비로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1955년 토지 개혁을 통해 집단화를 하였고, 다시 개혁개방이후 1983-84년 경 토지를 가구별로 분배하였다. 토지 분배는 첫째, 과거 조상들의 소유 토지를 자손들에게 분배, 둘째, 노동력 인구 1인당 1.5무(단 어린이에게는 1인당 7/8무) 분배

15) 토착 세력인 토사를 중앙 조정에서 파견한 유관(流官)으로 바꾸어 직접통치로 전환하고자 한 정책.

등의 두 가지 기준을 따랐으며, 출생과 사망에 따른 변동 없이 기존에 분배받은 토지를 유지하도록 했다.

평지에는 수도작 외에도 용과, 수박, 호박 등 경제 작물을 재배하며 산지에는 차, 고무나무, 파인애플 등을 재배한다. 1990년대 말 이전에는 소를 사육하였지만 고무나무와 차를 재배하면서 소는 더 이상 사육하지 않게 되었다. 돼지는 집집마다 많게는 10여 두까지 사육하였는데 현재는 촌 변 두리 지역에 모아서 사육하고 있다. 돼지는 경제적 이유로도 사육하지만 매년 설에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고 결혼을 할 경우에는 2-3 마리씩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오스와 국경을 맞댄 국경지대이자, 같은 민족이 국경에 걸쳐 거주하는 동일한 경제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라오스 양국의 변경지역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빈번한 경제적 교류가 있었다. 연구들에 따르면 늦어도 당대(唐代)에는 운남과 라오스간의 무역 통로가 형성되어 변민끼리의 민간 호시(互市)는 끊긴 적이 없고, 근대 동란 시기에도 국가간 무역은 없어도 변민 互市는 계속되었다.¹⁶⁾ 다만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로들이 단절되고 변민들의 이동도 거의 끊겨서, “밭에서 일하다가 총소리를 들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갔다.”¹⁷⁾ 1980년대 말 양국관계 정상화 후 다시 왕래가 살아나서 국가간 무역과 변경의 소액 교역 모두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촌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 염정이 있었던 시기에는 소금 교역뿐 아

16) 邵媛媛, 「中老邊境地區的文化多樣性、跨境互動與文化傳承: 基于西雙版納勐腊縣跨境民族的考察」, 『楚雄師範學院學報』 第30卷 第1期, 2015, 80쪽. 마르티네스(Martinez)는 국경의 경험이 사례마다 다르다는 점에 기반하여 ‘경계지대 교류(border interaction)’라는 용어를 발전시켰다. 중국-라오스 변경지역처럼 인접국의 경계지역이 공생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해 그는 ‘상호의존적 경계지대’로 구분하였다. 크리스 윌리엄스, 「변경에서 바라보다: 근대 서유럽의 국경과 변경」, 임지현 엮음, 앞의 책, 2004.

17) 朱凌飛·馬巍, 앞의 글, 2016, 44쪽.

나라 D촌민들이 라오스 사람들에게 소를 위탁하여 키우게 하였고 라오스에서 소를 사서 중국에서 팔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 위탁 사육과 소 교역은 10여 년 전까지 계속되었다. 촌민들은 국경 무역은 물론 국경 무역 보조 운수업 및 현지에서의 설치업 등 라오스 지역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종사하기도 한다.

촌의 A노인의 경우 현재는 태양광 발전기와 육실 시설을 라오스에 설치해 주는 일을 하지만 과거에는 라오스 지역에서 소를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했다. 소를 10여 마리 이상 구입해서 올 때는 오솔길로 올 수가 없어 큰 길로 왔는데 라오스와 중국 양측에서 모두 통과세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기는 중국에서 1,000위안 하는데 라오스에서는 1,600위안에 판매할 수 있어서, 운송비 300위안을 제하면 300위안 정도를 벌 수 있다.

A노인은 라오스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라오스에서 생산된 수박이나 바나나 등을 통관·운송하여 중국 국내 상인들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대리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라오스 지역은 토지가 넓고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2000년대 들어 라오스에 가서 토지를 임대하여 고무·수박·바나나 등을 재배해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현지 진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반 년에 1무당 토지 임대료가 5-600위안인데 비해 라오스는 200위안으로 훨씬 싸다. 그렇지만 라오스는 세금이 비교적 높고 정부와 일 처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D촌 주민도 있었다.

<사례: 중국과 라오스 사이의 교역 중개>

중국과 라오스 사이의 교역 중개인들은 지방정부와 결탁하여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데 중국 상인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통해야만 한다. 이 조직을 통하지 않으면 재배한 물건을 처분할 수도 없고, 세관과도 끈이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하면 정부의 관여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라오스에서는 세금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용

한다.

라오스 세관 통과 후에는 중국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중국세관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가 엄격하다. 인터뷰에 따르면 한꺼번에 많이 운송해도 안 되고, 차 1대에 1가지 물품만 운송해도 안 된다고 한다. 또한 1명의 통행증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어서, 본인 통행증의 범위를 넘는 양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타인의 통행증을 이용한다. 통행증이 없어도 통관을 하려면 돈으로 해결하거나 세관 상부와 인맥이 있으면 되지만 세관 사람들도 처벌이 두려워 그렇게 일처리하는 것은 꺼린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약간의 통관수수료를 내고 검역을 하면 된다.

중국 세관을 통과하면 중국 상인이 파견한 기사가 화물을 중국 내지로 운송한다. 단 상인이 돈을 송금할 때까지 기사와 화물, 차를 압류하고 있다. 상인이 송금해야 차를 보낸다. 라오스에서의 화물 구입가는 1킬로에 0.8 위안인데 상인은 1위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개 수입이 대략 1킬로에 0.2 위안이다. 차 1대에 30톤까지 운송할 수 있어서 6,000위안을 벌 수 있는데 1,000위안 정도의 부대 비용을 제외하면 4-5,000위안이 대체로 차 1대의 실제 이윤이다.

중국의 변민들만 라오스와 교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스인들도 중국으로 와서 매매를 한다. 라오스의 찹쌀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비싼데 라오스 사람들이 차를 몰고 부정기적으로 D촌으로 와서 찹쌀을 팔며 장청현에 시장이 열리면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한다. 라오스인들이 중국 변경지역 마을에 열대과일, 특산품, 농산품, 육류 등을 갖고 와서 파는 것은 상당히 보편화된 현상이다. 이 모든 경제적 교역은 중국과 라오스 양국에서 각각 변경의 주민들에게 특수한 통행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중국에서 '변민증'이라는 속칭으로 불리는 이 통행증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겠다.

IV. 라오스와의 변민 통혼

1. D촌의 혼인 현황과 변민 통혼

중국과 라오스 변경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라오스인과 중국인의 통혼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기록에 안 남아있는 사례가 많다. 2000년 이후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을 진흥시키고 변민을 부유하게 만든다(興邊富民)’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더욱 변경지역의 발전이 빨라져 타국 변민들에 대한 흡인력이 강해져서, 라오스 여자와의 통혼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 ‘거의 모든 변경 촌락마다 라오스 변민과 결혼한 집이 있을 정도’¹⁸⁾가 되었다.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3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남변경지역으로 넓혀 통혼상황을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중국에 오거나 합법적 절차로 와서도 중국에서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며 중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사는 불법혼인도 장기간 있어왔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이웃국가 변경지역의 주민들은 변민증을 신청하여 들어오면 1주일 이내, 3개월 이내, 또는 반년 이내로 거류기한이 나뉜다.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체류기한을 넘겨 거주하면서 현지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아예 변민증 수속을 하지 않고 오솔길로 와서 결혼해서 살거나, 간혹 국제 인신매매범에게 끌려온 경우도 있다.¹⁹⁾

18) 邵媛媛, 앞의 글, 2015, 80쪽.

19) 吳春玲, 같은 글, 2017, 16-17쪽. 이런 사실혼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에서는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2013년 九三學社원난성위원회는 2012년을 분계선으로 윈난 각지에서 특수정책을 택하여 2012년 10월 1일 이전에 형성된 사실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거나 임신한 경우엔 결혼증을 보충수속해주고 중국국민대우를 누리게 하자고 했다. 대신 아이를 낳거나 임신하지 않은 경우엔 엄격하게 법률규정을 집행

조사지역인 D촌의 혼인형태는 역사적으로 4가지 특징을 가졌는데, 데릴사위, 교차사촌혼, 민족간 혼인, 그리고 국경 너머 라오스 변민과의 통혼이다. 먼저 다이족은 노인을 봉양하는 문화로 인해, 아들이 없는 경우 노인 봉양을 위해 데릴사위를 들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이성형제의 자녀끼리 결혼이 가능한 교차사촌혼이 이뤄졌는데 이는 1970년대까지 존재하다가 개혁개방 이후에는 사라졌다. 그리고 과거에 조(趙)씨는 귀족으로서 다이족의 타姓과 결혼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민족간 혼인이 있는데, 개혁개방 이전에 이 마을의 다이족은 민족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았고 혼인 범위는 주변 촌락에 국한되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다른 민족과의 통혼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주로 촌내에서 족내혼이 이뤄졌고, 외부 촌의 경우 종족 관계에 있는 촌락과의 혼인은 가능했다. 1950-1978년 사이에는 촌내의 족내 통혼에서 다른 촌락으로 통혼권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었다. 그 후 1978-2000년에는 다른 현, 다른 지역, 다른 省으로까지 통혼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래 민족과 외래 성씨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족내 근친혼이 생물학적으로 智力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도 관련되었다고 촌민들은 이야기한다.

이 마을에서 라오스 변민과의 통혼의 정확한 역사를 조사과정에서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변경무역과 관련된 다른 인터뷰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라오스 신부들이 개혁개방 전에도 많았는데 1985-86년에 중국과 라오스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군부대가 와서 총을 겨누고 쫓아냈지만 여자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라오스 변민과 통혼을 한 사례들 중 아래 두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사례 1) 라오스 여자를 맞은 부부 중 가장 젊은 부부 사례 (2017년 2월

하여 강제송환을 하자고 했다. 高小雅. 앞의 글, 2017, 119쪽.

시아버지와의 인터뷰)

내 며느리는 내가 먼저 알았어. 우리 중국쪽 여자들은 말야, 내가 감히 얘기하지만, 10명 중국 여자 중에 8명이 도박을 해. 나는 도박을 아주 싫어 해. 좋은 점, 나쁜 점이 꼭 정해져 있진 않지만 말야. 내가 종종 외국에 가서 집을 짓고 다니면서 라오스쪽에 아는 형이 있는데 그 집에 갔다가 그 딸을 본 거야. 내가 이 아가씨를 알게 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돌아와선 아들에게 가서 좀 만나보라고 했어. 아들이 가서 마침 첫눈에 반한 거야. 이 며느리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도 안하고서 여기로 왔어. 며느리도 오고 싶어했지. 다들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쉽게 며느리 찾을 수 있는데 왜 라오스 가서 찾냐고들 하더라. 내가 연분(緣分)이라고 했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접촉 안해본 게 아냐. 후난(湖南) 여자 있었는데, 우리 집에 하루 와서 저녁까지 있으면서 계속 잠만 자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러더라구. 맨날 우리 농민은 바쁜데 말야. 차(茶) 따고 고무 채취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유일한 경제수입인데, 내가 아침 8시에 밥도 잘 차려서 그 여자 보고 밥먹으라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일러요, 일 있으면 먼저 드세요. 난 나중에 먹을게요” 하더라. 그래가지고 무슨 농촌에서 생존하겠어? 그래서 내가 아들 보고, 이런 며느리 들이면 아빠가 힘들어서 죽는다, 즐길 복이 없게 된다, 그치만 니들 자유연애하면 우리 부모는 상관 안하겠다고 했지. 또 한 명은 쓰촨(四川) 여자였는데, 밥도 우리가 퍼주고 젓가락도 그 여자 손에 건네주면서 아들에게, 니가 능력있으면 쓰촨 여자 데리고 살아라, 근데 나는 필요없다고 했어

그리고는 내가 라오스 가서 집을 지을 때 이 며느리를 보고는 아들에게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 이 며느리는 마침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어서, 내가 보고나서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중국에서 청춘을 낭비하지 말고 가보라고 한 거야. 마침 우리쪽 작은 길로 해서 라오스로 가면 2시간이면 가니 가보라고 했지. 아들이 가서 보고는 첫눈에 반해서, 와서는 너무 좋다고 해서 3주일만에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 내가 결혼식에 돈을 아주 많이 썼어. 신부쪽 가족이 우리 아들을 좋아해서, 나 보고 신부대를 600위안만 내면 된다고 했지. 그래도 라오스쪽 가서 결혼식 치르려면, 이쑤시개까지도 우리쪽에서 다 가지고 가야 하더라구. 3일 낮밤동안

라오스에서 3만 위안 이상 썼어. 그리고는 여기 와서 또 4만 위안 이상 써서 손님접대하고. 그 며느리는 내가 7-8만 위안 써서 데려왔어. 그래도 나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제 손녀도 2명 생겼어. 나는 아들이랑 며느리 보고, 농촌에선 애들이 크고 나서 화장품 사기도 부족하니 니들 열심히 노력해라, 우리 노인들이 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고 말해.

사례 2) 라오스 부인과 결혼한 촌민의 남동생 (2017년 2월 인터뷰)

라오스 여자는 지금은 여기로 데리고 오려면 비싸졌어, 왜냐면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저쪽 인구가 적어져서 비싸진 거야. 최근 2년동안 비싸졌지. 우리 형한테 물어봐. 예전에 신부대 얼마였는지. 몇천 위안이었어, 근데 지금은 몇만 위안 들어. 촌이랑 라오스 저쪽에서 다 결혼식 치러야 하잖아. 그거 간단하지 않아. 라오스 맥주 한 상자당 100위안이야. 맥주 비싸. 그리고는 악대 부르고, 열 몇 개 음향이랑 탁자랑, 여기보다 더 비싸. 저쪽에선 악대 부르면 몇천 위안이야. 저쪽 풍속은 춤추는 걸 좋아해. 밥먹고는 나가서 춤춰. 춤추고 노래부르고, 마시면서 노래부르고. 다른 건 우리쪽 풍속이랑 비슷해. 다 다이족이잖아. 그치만 우리쪽은 춤은 안 춰. 저쪽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야 하고, 목소리 좋으면 올라가서 부르고.

라오스 신부들 여기 중국 호구는 없어. 그 여자들이 잠주증(임시거주증) 수속을 해야 하는데, 장청 가서 해야 해. 첫해에는 1년 주고, 두 번째에는 6개월 줘. 비용은 많진 않아. 기한이 지나면 벌금을 내지.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애는 아빠 따라서 호구를 가질 수 있어. 우리 형네 애 둘도 다 호구 있어. 큰 여자애랑 작은 남자애 다 호구 있어. 라오스 형수가 여기 온 지 6년 되었어. 중국어 좀 듣고 말할 줄 알아. 사람들 평소에는 라오스쪽 가서 친척들 집 다니고, 설 쇠고 명절 지낼 때 다 라오스 가. 그 부인들도 다 라오스 사람들이니까, 매년 1-2번만 갈 수 없지. 포수이제(潑水節)니 뭐니 다 가야지. 포수이제는 같은 날이니까. 우리쪽에서 2-3시간이면 넘어갈 수 있어. 오토바이 타고 작은 길로 몰래 가. 작은 길은 몇 갈래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가지. 작은 길은 많아. 몰래 건너가는 곳도 많아. 가려면 쉽게 갈 수 있어.

라오스 가서 신부 데려올 때 중매인이 있어야 하는 건 우리랑 같아. 먼

저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리고는 중매인 찾아서 이야기하고, 여자쪽도 좋아하고, 남자쪽 좋아하고, 동의하고, 중매인 찾아서 가는 거야. 중국에서 결혼증 수속하는 건 간단해. 양쪽 신분증만 있으면 돼. 중국쪽은 20살 넘으면 결혼할 수 있고, 저쪽은 열 몇 살이면 결혼해. 거짓말로 신고하는 거야. 그여자들 16살 때 가짜로 20살이라고 해서 이쪽 와서 했잖아. 그여자들 결혼 일찍 해서, 라오스에서 13-14살에 결혼했어. 그여자들도 결혼해서 오길 바래. 우리쪽 노인들이 가서 설득해서 서로 동의하면 올 수 있어.

위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라오스 변민간의 혼인이 이뤄지는 데 있어서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근친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도, 지리적 근접성이 있었기에 시아버지가 먼저 며느리될 라오스 여자를 알게 된 후 아들에게 한번 놀러가서 보라고 했고 곧 당사자들끼리 좋은 감정이 생겨서 빠르게 결혼하게 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사례에서 시아버지가 중국 여자들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는 부분이다. 이는 중국 여자들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기보다, 그들이 과연 농촌생활에 안분지족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보다 좀더 경제적으로 낙후된 수준인 라오스에서 오는 여자에 대해서는 중국 여자보다 좀더 근면하고 중국 농촌생활에 만족하며 생활할 거라는 관념을 갖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듯, 신부대 자체는 적게 들더라도 혼례는 양쪽에서 다 치르다 보니 오히려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지만 그래도 그럴 만하다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평가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또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혼 자체는 여전히 중매인을 통해서 하는 관습이 있지만 당사자간의 감정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중국의 혼인문화와도 연결되지만, 혼인과 이혼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의 동의를 받는 다이족의 문화와도 연관된다.²⁰⁾ 기본적으로 양쪽의 언어와 풍습이 같은 민족으로서 비슷하고 포수이제와 같은 중요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도 라오스 변민과의

혼인을 쉽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오스와의 변경지역에 있는 중국의 다른 마을에 대한 연구에서도, 민족의 명절 때 양측 변민이 집중적으로 왕래하여 서로 상대 국가에 가서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고 정부간에도 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²¹⁾ 또한 결혼 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양가가 서로의 지역을 빈번히 오가면서 교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변민 통혼은 이 지역에서 전혀 낮설지 않은 현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점점 증가하여 신부대 가격도 높아져서, 과거에는 몇 천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1-2만 위안이 되어 오히려 현지 신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기도 하여, 최근 2년간 촌에 시집온 라오스 신부가 없었던 데에는 이렇게 높아진 비용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

이러한 통혼이 계속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니, 이 마을의 여자들이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더 나은 조건의 외지로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마을의 남녀비율 균형이 깨져, 많은 남자들이 연령이 지나서도 부인을 못찾으면서 평소 왕래가 밀접한 라오스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현재 중국의 생활조건이 라오스보다 낫기 때문에 라오스에서는 이 쪽으로 혼인이주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동조사팀의 장기간 현지조사를 통해, 이 마을의 라오스 부인들과 현지 부인들과의 관계 및 현지의 노인 등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가 모두 좋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²³⁾

20) 楊子諱, 「中老邊民跨境婚姻法律研究」, 『普洱學院學報』 第32卷 第2期, 2016, 51쪽.

21) 邵媛媛, 앞의 글, 2015, 79쪽.

22) 혼인을 앞두고 신랑과 신랑의 부모가 신부 부모에게 보내는 신부대의 의미 그리고 중국 농촌에서 신부대 관습 변화가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는 이현정, 「현대 중국 농촌의 시장개혁과 혼인관습의 변화: Jack Goody의 신부대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50집 1호, 2017 참고.

23) 그러나 중국과 라오스간의 통혼 상황이 모두 이 마을처럼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특히 윈난성과 광시성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라오스·베트남·미얀마 여자들과의 혼인 가정, 특히 불법으로 체류하며 사는 사실혼 가정들의 경우 상황이 별

2. 혼인의 행정적 관리

D촌의 변민들이 라오스 변민과 행하는 통혼은 같은 민족끼리의 결혼이라는 성격도 가지지만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국제혼인의 성격도 지닌다. 국제혼인은 양국의 출입경 및 호구관리와 관련되는 민감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행정적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며, 변민 혼인은 더욱 그러하다. 결혼 수속은, 중국에서는 ‘혼인법’ 8조 규정에 따라 남녀쌍방이 직접 혼인 신고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한다. 그러나 여러 특수한 경우의 혼인을 고려하여 중국은 일반적인 ‘혼인법’ 외에도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섭외민사법률관계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關係法律適用法)’ 22조에 따르면 섭외혼인²⁴⁾은 결혼체결지 법률이나 한쪽 당사자가 주로 거주하는 곳 법률 또는 국적국 법률에 부합하면 모두 유효한데, 중국과 라오스 변민간 섭외혼인은 대부분 라오스 변민이 중국으로 이주해온 것이므로 결혼수속은 중국 법률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중국이 변민 통혼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정한 ‘중국 변민과 인접국 변민 혼인등기방법(中國邊民與毗鄰國邊民婚姻登記辦法)’²⁵⁾ 6조에 따르면 이웃국가의 변민이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본인의 변민 신분을 증명할 유효한 증명자료(여권이나 국제여행증 또는 변경지구출입경통행증), 소재국 공증기구 또는 유관 기관에서 발급하고 그 국가에 있는 중국대사(영사)관이 인증한, 또는 중국에 있는 그 나라의 대사(영사)관이 인증한 본인의 배우자없음 증명 또는 중국에 있는 소재국의 대사(영사)관이 발급한 본인 배우자없음 증명, 또는 이웃국

로 좋지 않다.

24) ‘섭외혼인’은 서로 다른 국적의 국민이 결혼하거나, 같은 국적의 국민이 타국에서 결혼이나 이혼 등을 하여 생겨나는 혼인관계를 가리킨다.

25) 2012년 제정된 이 규정은 1995년 제정되었던 “중국과 인접국 변민 혼인등기 관리 시행방법(中國與毗鄰國邊民婚姻登記管理施行辦法,1995.2.17)”을 대체하였다.

가 변경지구와 중국 향(진)인민정부 동급 정부가 발급한 본인 배우자없음 증명.

이처럼 변민 통혼은 일반적 국제혼인과 달리 특수한 관리를 점차 제도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4년 라오스와 협의를 맺어, 너무 멀리 가지 않고도 장칭현 민정국에서 중국 변민과 라오스 변민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⁶⁾ 중국으로 혼인하여 이주해오는 라오스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라오스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라오스측에서는 현재 관련 증명서류 발급 협조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고 있고 중국보다 비용도 비싸서, 중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실혼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촌민들과의 인터뷰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라오스 변민과의 통혼 절차는 중국에서 점점 제도적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만, D마을 촌민들은 막상 라오스 부인을 데리고 각종 수속을 밟으려면 어렵다고 하였다. 먼저 중국 호구가 없는 라오스 부인은 잠주증(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라오스 신분증을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해야 한다. 잠주증 발급은 10위안이 들고, 기한이 넘어 다시 연장하려면 50위안 벌금을 내야 한다. 첫 수속에서 받는 유효기한은 1년이고, 그 다음엔 6개월에 1번 발급받게 된다. 결혼증 수속을 할 때는 먼저 라오스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마을 촌公所에서 증명 도장을 찍은 다음 중국측 縣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 가지고 온 증명서류가 라오스 문자이기 때문에 번역해서 설명한 후 다시 민정국에 가서 결혼증 수속을 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는 변민 통혼이 보편적 현상이 되어서 이 수속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

중국 국적법 7조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은 중국인의 근친속이거나 중국에 정착했다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26) 高小雅, 같은 글, 2017, 118쪽.

이유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 변민과 결혼한 라오스 변민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만 대부분의 라오스 신부들은 중국 국적을 잘 취득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법률의식이 높지 않고 심지어 중국에 ‘국적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제기된다.²⁷⁾ 라오스 정부는 현재 국경을 떠난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나 돌아올 뜻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무국적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변민 통혼으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 하는 변민 통혼은 정치적 영향에서 무관할 수 없으므로, 행정적 관리제도와 절차는 시기에 따라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 온 사람들은 3백 위안만 내면 중국 호구에 들어올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이 마을에서 중국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2000년 이전에 시집온 A가 유일한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가 2000년 이전에 시집온 유일한 라오스 신부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 다른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전에도 사실혼은 있었다. 라오스 부인들은 중국 호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라오스에서의 행정처리가 필요한데, 앞에서 보았듯 라오스에서 중국과의 통혼으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행정협조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속이 어려워 중국 호구를 못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부인들이 중국 호구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중국으로의 결혼이주를 선호하고 있다.

부인이 중국 호구를 얻지 못하더라도 자녀의 호구는 큰 문제가 없다. 라오스 부인들이 와서 낳은 아이는 모두 부친을 따라 중국 호구에 들어오게 된다. 심지어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27) 高小雅, 같은 글, 2017, 119쪽.

2016년 중국 국무원 관공청이 공포한 ‘호구없는 사람의 호구 등기문제에 대한 의견(關於解決無戶口人員登記戶口問題的意見)’ 7조는 이렇게 규정하였다: “중국 공민과 외국인, 무국적자가 국내에서 불법혼인으로 낳고 타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호구없는 사람은, 본인 또는 중국 국적을 가진 감호인이 ‘출생의학증명’과 부모의 비혼출생 설명, 중국공민측의 주민호구부에 따라 常住호구등기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D촌에서 보면 라오스 부인이 중국에 오기 전 라오스에 있을 때 낳은 아이들의 경우 호구에 문제가 생긴다. 조사에 따르면, 라오스 부인 중 과거에 라오스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서 중국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여 오게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상당수는 라오스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모 상태로 아이를 낳은 경우라고 촌민들은 말해주었다. 이렇게 라오스에서 낳아서 데리고 온 아이들은 모친과 마찬가지로 중국 호구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마을에 라오스에서 이렇게 온 아이가 2017년 12월 기준 현재까지 5명 있는데 모두 호구가 없다. 호구가 있는 아이들은 5살이 되는 해 9월에 취학전 준비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촌 옆의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중학교 갈 때는 정동진으로 가야 한다. 라오스 부인들이 라오스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은 중국 호구가 없어서 중학교까지만 허락이 된다. D촌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후 학기마다 300위안 넘게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중학교 때에는 학기마다 625위안 보조를 받는다.

이 마을은 소수민족 촌락이기 때문에 계획생육 실시후 집마다 2명을 낳을 수 있다. 초과하면 벌금을 무는데 아이 한 명당 5천 위안을 내야 한다. 2명의 출생 간에 4년 간격이 있어야 하고, 이 간격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을 문다. 마을 부녀들은 대부분 2명을 낳고서 병원에 가서 피임수술을 한다. 8-9년 전에는 나팔관을 묶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고리를 자궁에 넣는 방식으로 피임수술이 이뤄진다.

의료시설은 촌과 가까운 곳에 위생원이 하나 있지만 조건이 안 좋아서 촌민들은 정동진에 있는 병원에 가고 만일 안되면 장청현까지 간다. 부녀

들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과거에는 정동진에서 낳을 수 있었는데 나중엔 정동진에 의사가 없어져서 장청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1명당 의료보험비가 매년 120위안인데 라오스 부인들은 의료보험이 없으므로 보험비를 낼 필요가 없다. 과거에 출산은 약 200위안 정도 소요되었고 지금은 순산을 해도 2-3,000위안이 든다. 호구가 없는 라오스 신부들이 장청현 가서 출산할 때 돈이 크게 더 들지는 않는다. 라오스쪽 의료조건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인들이 장청현에 가서 애를 낳고, 가다가 길에서 낳는 경우도 많다. 라오스 여자들이 와서 애를 낳을 때 언어가 안 통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번역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한다.

D촌의 풍속에 따르면 바깥촌에서 온 사람은 며느리든 사위이든 촌에 들어올 때 모두 신분의 전환을 상징하는 뜻으로 촌에 몇십 위안의 돈을 내야 하고, 이후에 그래야 촌사람들과 함께 활동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라오스 신부들이 호구가 없어서 생활 보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 마을 촌민들은 오랫동안 고민 끝에 대책마련을 위해 촌 대회를 열었다. 촌에서 대회를 열면 당원과 촌 간부가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여 방법을 찾는다. 촌대회 결정을 통해 촌의 호구 없는 이들도 촌에 어느 정도의 돈을 내면 이후 촌에서 논밭을 나눠주고 상응하는 보장을 해주기로 하여, 2016년부터 호구가 없는 라오스 신부들도 돈만 내면 이후 촌 내에서 땅을 분배받고 동등하게 촌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다.

V. 중국의 변경관리: 관행과 제도

중국 변경지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과 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 생활공간과 관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변경관리는 한편으로는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나타난다. 변민증으로 불리는 ‘변경지구 출입경 통행증’이나 ‘변민 호시(邊民互市),’ 그리고 일반 국제혼인과는 다른 특수 규정을 통해 변민 통혼에 편의를 제공하고 제도화한 점 등이 제도적 기제라면, 출입경과 혼인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의 관행이나 행태를 묵인하는 것이 집행과정에서의 특수한 변경관리라고 할 수 있다.

D촌 주민들에게 발급되는 변민증의 정식 명칭은 ‘중국-라오스 변경지구 출입경 통행증’이다. 변경지역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 우리가 조사한 마을을 종합해보면 같은 중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통행증을 발급하여, 어느 출입구를 통해 오갈 수 있는지,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어느 지역들까지 출입이 가능한지가 모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다. 통행증에는 “신분: 변민”이라고 나와 있어서, 내지의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신분으로서 변경지역의 주민들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통행증임을 보여준다. D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곳의 변민증은 라오스 북부 3개 성(省)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었다. 변민증을 소지한 변민은 정식으로 설치된 세관의 별도 통도, 즉 ‘변민 호시 전용 통도’를 통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오솔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변방수비대가 변민증만 확인하고 통과시켜준다고 한다. 이러한 통행증은 중국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도 발행하기 때문에 라오스의 변경 주민들도 자유로운 출입과 교역이 가능한 것이다.

주링페이와 마웨이(朱凌飛·馬巍)는 이러한 변민증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²⁸⁾ 첫째, 변민증은 마치 여권처럼 명확한 국민신분을 암시하며, 양국 변민증의 서로 다른 수속과 사용법은 ‘너’와 ‘나’의 구분을 체현하고, 양국 변민의 국가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양국 변민

28) 朱凌飛·馬巍, 앞의 글, 『民族研究』 第4期, 2016, 44쪽.

이 비록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같은 변민 신분으로서, 국경을 가로질러 촌민들간에 서로에 대한 일종의 동일시가 생겨나서, 공통의 언어와 문화와 결합하여 국경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지역적 집단 의식을 만들어낸다; 셋째, 변민증은 변경지역 주민만이 신분증에 기초하여 만들 수 있고 여권보다 훨씬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어서, 변민들의 독특한 변경 의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1955년부터 북한, 몽골, 네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 7개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이 변민증을 발급해 왔다.²⁹⁾ 그 외에도 훈춘(琿春)의 경우 ‘호시증’(中俄邊民互市貿易互市證)을 발급하는데,³⁰⁾ 변경지역에 통행과 교역을 위한 출입과 편의를 위해 유사한 다른 제도가 만들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원의 변경무역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邊境貿易有關問題的通知)(1996.1.3.)”에 의하면 변경선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변민은 정부가 비준한 개방지역과 호시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교역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에 3,000위안 이하의 생활용품에 대한 변민들의 면세 교역을 허용하였으며,³¹⁾ 2008년에는 허용금액을 8,000위안으로 인상했다.³²⁾ 앞에서 살펴본 D촌과 라오스 지역의 경제적 교역은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미 보았듯 변민끼리의 혼인은 일반적 국제결혼과 달리 “중국 변민과 인접국 변민 혼인등기 방법”과 같은 별도의 특수규정으로 관리된다. 일반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조건과 다르게 여권이나 변민증 등으로 필요서류가 충족되도록 한 것은, 점점 늘어나는 변민 통혼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규정에서는 본인의 혼인상황 그리고 중국인과의 혼인에

29) 「中朝中尼中印新版邊民證啓用」, 『人民日報海外版』 2016.11.4.

30) “琿春中俄互市貿易區管理局琿春(中俄)邊民互市貿易互市證申辦說明(2017.2.8.)”

31) “對外經濟合作部,海關總署關於進一步發展邊境貿易的補充規定的通知(1999.1.1.)”

32) “財政部,海關總署,國家稅務總局關於促進邊境貿易發展有關財稅政策的通知(2008.11.1.)”

대한 본국 정부기관의 동의를 필요했던 데 비해, 2012년 개정 규정에서는 본인의 서명 그리고 혼인상황에 대한 공증증명 제출로 간소화했다. 흥미롭게도 이 규정에서 일종의 국제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직계친척이나 3대 내의 혈족관계가 아니라는 서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기한 것은, 국경이 민족뿐 아니라 친인척을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놓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민증과 변민 호시, 혼인에 대한 특수규정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변민들의 생활공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훨씬 더 큰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뷰한 마을 주민은 자신도 변민증을 만들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3-4개월에 한 번씩 라오스로 놀러간다고 했다. 정식 출입경 통로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오가던 오솔길로 변민증 없이 출입해도 심지어 변방수비대의 간섭조차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닌 한 변민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국가 관리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변민들의 전통적 일상생활의 범위에 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탈법적 행위이더라도 묵인하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라오스 친척 방문 또는 라오스에 놀러가는 경우뿐 아니라 의료시설이 좋지 않은 라오스 친척들이 중국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모두 공식적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오솔길을 이용한다.

이는 변경에 대한 관리가 국경선에 대한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의 역사와 전통을 인정하며 변경지역 자체를 특수하게 관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으로서의 변경 관리는 변경지역을 국경에 의해 분리되고 단절되는 공간이 아니라 초국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변경의 민족지역은 낙후된 전통과 역사의 공간이지만, 역사와 전통이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변강은 과거의 유산이지만 과거의 유산이 미래와 접합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과거와

미래의 접합은 선으로 그어진 근대 국가 중국이 변경지역에서 선을 뛰어 넘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공간과 활동에 대하여 제도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인정하고 묵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Ⅵ. 결론

중국은 2.2만 킬로미터의 긴 국경선 중 86%가 넘는 1.9만 킬로미터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변강이다. 근대 이후 그어진 국경은 이들이 생활하던 강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이들의 생활공간과 국경간의 괴리가 생겨났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간의 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는 국경이 이들의 생활 양태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제약한 것은 아니었다.

원난성 D촌의 사례는 국경을 가로질러 변민들끼리 빈번한 교류와 혼인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교류와 혼인은 한편으로는 변강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변민의 관행을 묵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변민증’이라는 특수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례적 왕래와 교류에 대한 불간섭은, 변강이 국경선에 의해 단절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변강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변민증 소지자들에게 자유로운 왕래가 묵인되는 현상은, 원난뿐 아니라 다른 변강지역에서도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점은 북·중 국경지역의 변화이다. 흔히 이 지역은 철조망으로 왕래가 엄금되어있고 마치 이것이 오래된 현상처럼 인식되지만, 1990년대까지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철조망과 압록강대로·두만강대로가 만들어지면서 국경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북한 관련 국제정치 문제로 인한 제한도 생

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강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 국가가 현지의 역사·전통과 특수 상황을 인정하고 묵인하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간여하여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강에 대한 특수 정책은 역사·전통과 현상에 대한 인정, 즉 국가와 소수민족 혹은 국가와 지역간의 타협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에 변강의 교류가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가 중국의 긴 역사적 실천을 현재적 담론으로 소환한 것이라면 변강에서의 교류도 과거의 역사와 미래가 조우하며 재구성되고 있는 현상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개설적으로 소개하며 변경과 변민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D촌에 대한 심층조사와 더불어 중국-베트남, 중국-라오스, 중국-미얀마 국경지대의 교류에도 확장해나가면서, 변경지역에서 국경을 가로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국가 권력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변경의 관점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나아가 국가들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 국경을 넘나드는 혼인, 변경관리, 변경, 변민, 변강, 중국, 원난

(논문투고 : 2017.12.12 / 논문심사완료 : 2017.12.15 / 논문게재 확정일 : 2017.12.18)

참고문헌

- 강주원,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눌민, 2016.
- 김광억, 「총론: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005.
- 김홍철, 『국경론』, 민음사, 1997.
- 박상수, 「중국 근대 민족국가의 창조와 변강문제: 청말-민국시기 변강 인식의 변천」, 안병우 외, 『중국의 변강 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 안병우, 「총론: 중국의 변강인식과 민족갈등」, 안병우 외, 『중국의 변강 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 劉恩恕·劉惠恕, 『中國近現代疆域問題研究』, 2009; 손준식 역, 『중국 근현대 영토문제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이강원, 『중국 변강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어룬춘족 사회의 다민족화와 정체성의 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현정, 「현대 중국 농촌의 시장개혁과 혼인관습의 변화: Jack Goody의 신부대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50집 1호, 2017.
- 임지현 엮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변경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다』, 휴머니스트, 2004.
- 전인갑·장정아,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구성 再論: 중심의 상대화를 위한 모색」, 『中國學報』 69집, 2014.
- 크리스 윌리엄스, 「변경에서 바라보다: 근대 서유럽의 국경과 변경」, 임지현 엮음,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변경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다』, 휴머니스트, 2004.

- 高小雅, 「中老邊民涉外婚姻法律問題研究: 以雲南江城曼灘傣寨爲例」, 『法制博覽』 2017年10月.
- 羅崇敏, 『中國邊政學新論』, 人民出版社, 2006.
- 馬大定 主編, 『中國邊疆經略使』, 中州古籍出版社, 2000.
- 邵媛媛, 「中老邊境地區的文化多樣性、跨境互動與文化傳承: 基于西雙版納勐腊縣跨境民族的考察」, 『楚雄師範學院學報』 第30卷第1期, 2015.
- 楊子誼, 「中老邊民跨境婚姻法律研究」, 『普洱學院學報』 第32卷第2期, 2016.
- 吳春玲, 「我國西南邊境地區非法涉外婚姻問題初探」, 『湖南警察學院學報』, 第9卷第2期, 2017.
- 雲南省江城彝族自治州哈尼族自治縣志編纂委員會 編, 『江城彝族自治州哈尼族自治縣志』, 雲南人民出版社, 1989.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條約法律司 編, 『中華人民共和國邊界事務條約集: 中老卷』, 2004.
- 朱凌飛·馬巍, 「邊界與通道: 昆曼國際公路中老邊境磨憨、磨丁的人類學研究」, 『民族研究』 2016年第4期, 2016.

Cross-border Trade and Marriage: Case Study of a Chinese Yunnan Minority Village

Ahn, Chi-young & Chang Jung-a

The current Chinese border was demarcated in the modern era. Acknowledging the gap between traditional living spaces and modern borders,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cross-border trade, marriage, and state management in a minority village in Yunnan Province, China. It is based on extensive fieldwork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Chinese academy.

Situated along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Laos, the village is populated by approximately 500 Dai people (傣族) in 110 families mainly, with Han Chinese and Hani minorities. As border inhabitants, the Dai people are endowed with special border-crossing cards that allow them to cross the border more freely than inland peoples.

The village territory is large, and the inhabitants mainly engage in agriculture and raising livestock, such as cows and pigs. Due to the village's proximity to Laos, they also participate in various economic exchanges with the Laotians, including cross-border trade and commercial aid. In fact, the current Chinese border bisects the territory that traditionally defines the economic network of the Dai people.

While the Dai villagers rarely intermarry with inland ethnicities, marriage with Laotian Dai people is common, and such cross-border marriages differ in several respects from typical international marriages. First, the fluid border means that villagers are able to freely meet and

become acquainted with one another. Second, a similar language and culture mitigate friction both before and after marriage. Third, shared customs and holidays facilitate the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between married couples and extended family.

Since cross-border marriages are connected to border management in both countries, they have been periodical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a cross-border Dai couple marries, the Laotian wife commonly comes to live in China. The marriage registration procedure in China is relatively simple, but instances in which a bride formally enters a Chinese household (hukuo) or becomes a Chinese nationality are few. According to Chinese policy, however, the children of Laotian mothers enter the household register under their Chinese father to avoid problems when entering school or finding jobs. Despite the fact that Laotian wives are excluded from the household register, they are treated as equals in this village, with respect to land distribution.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Dai of this village in Yunnan Province use their special designation as border inhabitant to freely move back and forth across the Chinese - Laos border to engage in trade and marriage. Although concessions are made for these people, China's border management differs from region to region.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the interaction between border management and the behavior of border peoples.

Key Words : cross-border trade, cross-border marriage, border management, border, border inhabitant, borderland, China, Yunnan